

2022년 제1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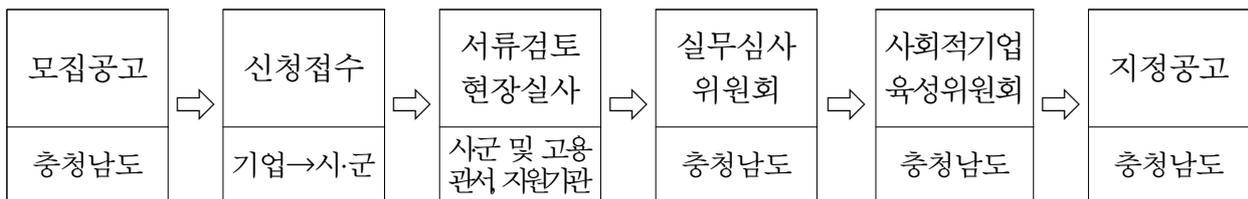
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,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1. 추진근거

- 「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지정)
- 「2022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 (고용노동부)

2. 추진개요

- 사업명: 2022년 제1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
- 지정기간: 지정일로부터 3년
- 모집기간: 2022. 2. 25.(금) ~ 3. 15.(화) 18:00까지
- 지정절차



3. 추진실적

□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실적

구분	소계 (연도별)	일자리 제공형	서비스 제공형	지역사회 공헌형	혼합형	기타형
소계 (유형별)	112	51 (45%)	11 (10%)	28 (25%)	8 (7%)	14 (13%)
2021년	44	21	5	12	2	4
2020년	24	9	4	8	1	2
2019년	32	17	2	5	3	5
2018년	12	4	-	3	2	3

4. 지정대상

○ 신청자격

- (조직형태) 민법상 법인·조합, 상법상 회사·합자조합 등
- (사회적 목적 실현)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,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
- (영업활동 수행)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
- (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) 이윤의 2/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(정관 등에 기재)
- (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)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
- (교육이수)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

○ 지정유형(5가지)

구분	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	취약계층 고용	매출(수입 또는 지출)	비고
① 일자리제공형	-	30% 이상	-	
② 사회서비스 제공형	30% 이상	-	-	
③ 지역사회 공헌형	가	20% (또는) 20%	-	시군 범위 내
	나	-	지역 문제해결 하기 위한 매출이 40% 이상	
	다	-	지역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하는 조직에 대해 컨설팅, 마케팅 등 지원 매출 40% 이상	
④ 혼합형	20% (동시)	20%	-	
⑤ 기타(창의.혁신)형	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(사업의 실적을 계량화 할 수 있는 경우는 동 유형으로 불인증)			

5. 세부 추진계획

① (22.2.25.)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공고

② (22.3.2.) 온라인 사업설명회

- 일 시: 2022. 3. 2.(수) 14:00~16:00

- 접속방법: 일반PC 또는 모바일 zoom앱

- 참석대상: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

- 주요내용: 신청자격, 구비서류 안내, 통합지원시스템 사용법 등

③ (22.3.15.) 공고 접수마감

④ (22.3월말) 신청서류 검토

- 검토기관: 시·군 담당부서

- 검토내용: 지정요건 검토(보완요구, 반려, 부적격 통보 등)

⑤ (22.4월) 현장실사

- 실사기관: 시·군, 고용노동관서, 지원기관(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)

- 실사방법: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관서와 지원기관과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

- 확인사항: 제출한 구비서류의 기재사항 사실여부 및 사업장 혼재 여부, 별도 사업체 운영여부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

⑥ (22.4월말) 실무심사 위원회 심사

- 위원회 구성: 10인 이내(고용노동부 업무지침 적용)

- 심사대상: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

- 심사내용: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정성적 평가

- 심사방법: 사업계획 설명(기업) → 질문 및 답변 → 토론 → 결정

⑦ (22.5월)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심의

- 위원회 구성: 육성위원 16명

- 심의방법: 실무심사 위원회 결과 상정

- 의결: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⑧ (22.5월말)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고

단, 신청기업 수,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상기일정 변동 가능

6. 소요예산

- 총 소요예산: 6,150천원
 - (심사수당) 2,100천원=30건×10,000원×7명
 - (참석수당) 1,050천원=(기본100,000원+추가50,000원)×7명
 - (심사자료) 3,000천원=5권×권당60,000원×10부
- 예산과목: 지역경제육성-사회적경제활성화-사회적경제조직발굴 및 육성-사무관리비(201-01)
- * (소요예산 산출기준: 신청기업 30개소, 심사위원 7명) 접수결과 및 심사위원 구성에 따라 적의 변경

7. 향후일정

- 공모일정 통보 및 홍보요청(시·군, 유관기관 등)
- 공고문 게시(도 홈페이지, 통합지원시스템)
- 사업설명회 자료 준비 및 개최

붙임 작년도와 달라진 점 1부. 끝.

□ 주요 개정사항

구분	작년도(2021년)	금년도(2022년)	비고
영업활동 수행기준	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으로 고용해야 함	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으로 고용해야 하며, <u>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</u>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	기준 강화
	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영업실적 필요	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의 영업실적 필요	기준일 변경
	-	사업자등록증 있어야 함 (필수사항)	신설
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	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	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	기준일 변경

□ 심사기준안(신설)

심사항목	세부심사내용	배점
사회적 가치 추구	○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소셜미션·비전 명확성 ○ 사업필요성, 해결하려는 사회문제의 명확성	25
사업 목표	○ 경제적가치 창출 목표 ○ 사회적가치 창출 목표	20
사업내용의 우수성	○ 사업내용의 구체성 ○ 비즈니스 모델 ○ 유사 모델과의 차별성 및 경쟁력	25
사업 역량	○ (예비)사회적기업가로서 사업수행 의지 및 사업목표 명확성 ○ 대표자 역량 및 전문성, 조직·인력구성 현황 ○ 사업수행 자원확보 계획(고객, 판로, 사업장, 지역자원 연계 등)	30
심사항목		100

※ 당초 심사기준: 사업의 우수성(40점), 기업의 견실성(30점),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(30점)